

발행인 : 서대문구청장

편집인 : 홍 보 과 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 330-8708

# 서대문구보

제2388호

2014. 9. 17.

선	기 관 의 장
람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입법예고】

제2014 - 71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2014 - 71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공 포 문】

제10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제103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04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4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0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고 시】

제2014 - 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제2014 - 123호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 【인사발령】

제2014 - 176호 지방공무원 휴직 및 복직  
 제2014 - 177호 지방임기제공무원 신규임용  
 제2014 - 178호 지방공무원 근속승진  
 제2014 - 179호 지방공무원 전·출입 및 전보, 휴직  
 제2014 - 180호 지방공무원 휴직  
 제2014 - 181호 지방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연장

● 구보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 (구정소식→공고→서대문구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보발행일은 매주 수요일(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발행)이며 발행일 3일전까지 접수합니다.

공									
람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716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9. 17.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 1. 개정이유

『도로법』이 전부개정(2014.1.14, 시행2014.7.15) 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일몰제 적용 및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의 회피사유와 해촉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재원조성 근거 법령인 「도로법」 제76조를 「도로법」 제91조로 변경 함.(안 제2조제1호)
- 나. 서대문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안 제4조의2)
-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확대 및 민간전문가 참여비율을 신설함.(안 제6조)
- 라. 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이해관계의 제척근거를 신설함.(안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토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 중앙 [\[http://www.sdm.go.kr/\]](http://www.sdm.go.kr/) 규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전문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65

서대문구청 토목과 (우편번호 102-703)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770, FAX 02- 330-1615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719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 및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단위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평생학습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대상에 다문화가족 추가 규정 (안 제5조제3항제5호)
- 나. 동별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 다. 기존 평생학습관의 기능에 평생교육 상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사항 추가(안 제12조제7호, 제8호)
- 라.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및 해촉 규정 보완(안 제7조제4항, 제7항)
- 마.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제척사항 추가(안 제8조제3항)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교육지원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홍은동> 서대문구청 제4별관 3층 교육지원과, 우편번호 : 120-102, Tel : 330-1043, Fax : 330-8624, E-mail : piero247@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http://www.sdm.go.kr/) 입법예고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35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과 기업은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를 촉진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 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 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 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
- 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
-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① 구청장은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을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 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다른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공유사업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업으로 당해 회계연도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서대문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대문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제10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공유 관련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국장 1명과 과장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서대문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3조)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제4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6조)

라.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 제10조)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36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
2. 서대문구의회 의장
3. 서대문경찰서장
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서대문소방서장

6. 서대문세무서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

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

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대문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협의회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 3. 회의록 작성·보존
-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행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조)
- 나. 지역치안협의회 기능, 구성 및 위원의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 ~ 제9조)
- 다. 협의회 내 실무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0조)
- 라. 협의회 운영의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2조)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37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5년” 을 “3년” 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시설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위탁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재위탁 시기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개정(2013. 11. 8)으로 민간위탁 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우리구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으로써 다른 사무 수탁자와의 형평을 기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지도감독과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

### 2.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으로 개정함(제5조 제4항)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38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구 경로당에 운영 비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시설의 건전하고 안정된 운영을 도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건강 유지 및 활기찬 노후생활 등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을 계승코자 함

#### 2. 주요내용

- 경로당시설 운영 비품 지원 사항을 신설함(제9조 제6호)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39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소관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심의업무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등을 누설한 경우
-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5.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3조의 심의 안건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소관 팀장으로 한다.

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최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아동학대, 아동유기 등으로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아동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 방법 및 지원서비스 등을 심의하고, 이를 통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나아가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
  - 아동 업무 공무원,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의사 또는 교사, 아동단체, 시민단체의 아동분야 업무 전문가 등
-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
  -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
- 다. 위원회의 위원 임기 및 해촉 사항을 규정함(제4조 ~ 제6조)
- 라.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마. 긴급을 요하는 경우 우선조치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여 시의적절한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함(제10조)
- 바. 회의의 비공개 및 비밀 유지, 회의록 작성, 수당 지급 등 전반적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제11조 ~ 제14조)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40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육정보센터” 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한다.

제3조 제목 “(위원회의 구성)” 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및 제10조의2 규정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영유아 보육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2 제목 “(위촉 해지)”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중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방과 후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설치) 수탁자는 법 25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제목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은 법 25조 및 법 시행규칙 제26조를 따른다.

제20조 제목을 “(보육교직원 임용 및 연령)” 을 “(보육교직원 임용)”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을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이하 “보육정보센터” 라 한다)” 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2조제1항, 제2항 본문 및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정보센터장”을 “육아종합지원센터장”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24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항과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보육정보센터운영위원회”를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9명 이내”를 “13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③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위촉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장 1명
2. 보육전문가 1명
3. 관계공무원 1명
4. 어린이집원장 3명
5. 보육교사 대표 3명
6. 학부모 대표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중 “보육정보센터” 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보육정보센터” 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육정보센터” 를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 로 한다.

제7장 어린이집 입소대상자의 선정 및 퇴소를 삭제 한다.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현행 관련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함  
( 제1조, 제21조 ~ 제27조, 제30조 )
- 나.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보육의 우선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및 보완함 (제3조 ~ 제8조, 제15조 ~ 제16조, 제35조 ~ 제38조)
- 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완함  
( 제4조의2 )
- 라. 보육교직원의 정년 조항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 제20조 )
- 마.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통합  
개편함 ( 제23조 )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41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의 관리와 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 인증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이미지화한 증표를 말한다.
2. “수입증지요금 인증기(이하 “인증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세입금 납부 및 구매)** ①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등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2.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서류에 인증기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
- 2. 색채
  - 가. 자동인증기 : 초록색
  - 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
- 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인증기고유번호

**제5조(인증기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인증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인증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인증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 ① 관리자는 인증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고(이하 “구금고” 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다음달 5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종이수입증지의 환매)**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오손 또는 훼손되어 환매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 가격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책임)**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

담당	담당팀장	과(동)장

□ 총괄

월 일	금일까지 누계(A)		금일실제발행(A-B-C)		금일결손(C)		전일까지누계(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 금일발행내역

구분 민원서류명	금일발행(A)		금일결손(B)		실제발행(A-B)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계						

※ 결손사유

붙임 : 일일전표 및 납부영수증 (별도첨부)

[별지 제2호서식]

## 수입증지 환매청구서

서대문구청장 귀하

성 명			
주 소			
사 유			
환매금액		액면금액	
내 역			
종 별	수 량	액면금액	환매금액
환불은행,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수입증지를 환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인 또는 서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종이수입증지 납부제도 폐지”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수입증지요금인증기로 대체하면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 판매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른 수입금 납입 조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판매 중단에 따른 관련 규정을 삭제하며, 수입증지 및 수입증지요금인증기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제2조)
- 나. 인증기 관리책임자 및 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입금에 대한 결산책임을 규정함. (제5조)
- 다. 무인민원발급기 및 신용카드 결제 확대에 따라 이에 대한 수입금 납입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등을 신설함. (제6조)
- 라. 종이수입증지 교환 규정을 삭제하고 환매청구만 가능토록 개정함 (제7조)
- 마. 기존 발행된 종이수입증지에 대해서는 폐기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부칙 제2조)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42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공탁 등)” 을 “(교부금전의 예탁)”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공탁하거나 또는 구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를 “구 금고에 예탁 할 수 있다” 로 하고,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제50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 해제)” 를 “(위원의 해촉)” 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를 “해촉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5. 위원이 영 제110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4. 1. 1. 字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의 공탁을 지정된 금고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에 대한 처리 방법 중 공탁을 삭제 (제16조)

-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액 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

나.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개선·보완 (제50조)

-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는 자 등에 대한 해촉 기준을 명시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43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세율)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세율) 법 제34조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구분	세율
제1종	67,500원
제2종	54,000원
제3종	40,500원
제4종	27,000원
제5종	18,000원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면허세의 세율 적용례) 제6조 및 제8조 개정 규정은 지방세법 부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2014. 1. 1字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면허세 정액분 세율이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세율과 동일하게 적용 (안 제6조)

나.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인상함 (안 제8조)

- 지방세법 제34조에 따른 세율과 같이 일률적으로 50% 인상  
현행 12,000원 ~ 45,000원 → 변경 18,000원~67,500원

공 포 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2014년 9월 1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조례 제1044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본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 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로 하고, “시행령 제8조” 를 “시행령 제12조” 로 한다.

제7조의 본문 중 “취득하는” 을 “보유하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및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 규정을 개선·보완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관련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2013.7.26호)·「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2013.7.1호)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관련 규정 정비(안 제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에서 사업의 양수 등 방식의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만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감면조례에는 15년으로 되어있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감면기간을 벗어난 사항을 정비



고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 - 122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7길 14 외 3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창천동 114-8	신촌로7길 14	2014.09.17	신촌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2	연희동 114-14	연희로110아길 37	2014.09.17	연희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3	홍은동 421-6	명지대길 36-5	2014.09.17	명지대학교 인근도로	
4	남가좌동 338-38	증가로 113	2014.09.17	옛 증가로 도로명칭 인용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330-10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고 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제2014 - 123호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등의 열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 09. 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5나길 67 외 10건

연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붙임조서 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지적과(☎330-1078)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참고사항

- 금번에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이 도로명 주소가 부여됩니다.

## 인사발령

인 사 발 령

(발령 제176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역	현 직	
			부 서	직 급
1	박 용 민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질병, 연장)을 명함 (2014.09.13~2015.03.12)	주민자치국	지방세무주사보
2	염 호 열	복 직 을 명 함 어르신청소년과 근무를 명함	주민자치국	지방운전서기보

- 2014.09.13자 -

(발령 제177호)

연번	성 명	발 령 내 역	현 직	
			부 서	직 급
1	고 영 민	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9호(행정)에 임함 지역활성화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14.9.15~2015.9.14-주당35시간)	신 규	임 용

- 2014.09.15자 -

(발령 제178호)

연번	성명	발령내역	현직	
			부서	직급
1	이미정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행정지원과	지방행정서기
2	김경란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민원여권과	지방행정서기
3	이근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4	정현주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어르신청소년과	지방행정서기
5	강영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어르신청소년과	지방행정서기
6	신혜숙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주택과	지방행정서기
7	심현자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건설관리과	지방행정서기
8	박현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위생과	지방행정서기
9	김윤미	지방행정주사보에 임함	남가좌제1동	지방행정서기
10	이상우	지방위생주사보(사역)에 임함	주택과	지방위생서기 (사역)
11	장우영	지방전기운영주사보에 임함	행정지원과	지방전기운영서기
12	김형석	지방토목운영주사보에 임함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지방토목운영서기
13	염호열	지방운전서기에 임함	어르신청소년과	지방운전서기보

- 2014.09.15일자 -

## (발령 제179호)

연번	성명	발령내역	현직	
			부서	직급
1	박상욱	동대문구 전출을 명함	남가좌제2동	지방행정서기
2	최정아	서대문구 전입을 명함 남가좌제2동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3	권명숙	서대문구 전입을 명함 지방행정서기에 임함 북가좌제2동 근무를 명함	우정사업본부 경인지방우정청	행정서기
4	장승완	도시관리과 근무를 명함	토목과	지방시설주사보 (토목)
5	이종석	교통행정과 근무를 명함	도시관리과	지방시설서기 (토목)
6	설남희	주민자치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14.09.15 ~ 2015.09.14)	홍은제1동	지방행정서기

- 2014.09.15자 -

## (발령 제180호)

연번	성명	발령내역	현직	
			부서	직급
1	김봉선	주민자치국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및 제6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육아)을 명함 (2014.09.18 ~ 2014.12.31)	푸른도시과	지방녹지주사보

- 2014.09.18자 -

(발령 제181호)

연번	성명	발령내역	현직	
			부서	직급
1	전은자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친환경급식)에 임함 교육지원과 근무를 명함 (근무기간 : 2014.9.19~2016.9.18-주당35시간)	교육지원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2014.09.19자 -